

수급자(보호자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



(근거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, 제40조 등)

- 요양보호사 차량으로 보호자의 개인적인 볼 일이나 병원 및 외출 동행
-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, 빨래, 시장보기, 반찬 만들기, 김치 담그기, 가족이 거주하는 방 청소
- 김장도움, 결혼식 또는 기타 집안 경조사 지원, 부업에 참여하기
-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 지원
- 가게보기, 배달하기, 가게청소, 가게 설거지, 가게 음식준비 등
- 신체기능 개선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요구
- 잔디 깎기, 텃밭 매기 등

성적인 농담, 과도한 신체접촉, 무리한 안마 요구 등을 할 경우 급여 중단과 더불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요양보호사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시킬 경우 수급자(보호자)에게 제공되는 공단 부담금에 대하여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안내합니다.

-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을 위한 위법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기관은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하거나,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거나, 공단에 부담청구 할 가능성이 큼니다.
-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내셔야 급여이용 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장